

# 統一以後의 社會經濟體制\*

## —우리式 社會的 市場經濟, 하나의 試論—

張 原 碩\*\*

< 目 次 >

- I. 問題提起와 第3의 體制
- II. 體制模索을 爲한 論點
- III. 獨逸의 社會的 市場經濟의 內容
- IV. 統一以後의 社會經濟體制  
—우리式 社會的 市場經濟—

### I. 問題提起와 第3의 體制

南北經濟交流의 진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狀況下에서, 그리고 점차 고조될 統一指向의in 분위기를 고려하여, 통일에 대비하는 또는 統一以後의 社會經濟體制를 미리 연구해 두는 것은 상당한 意義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아울러 생각해야 할 점은 2次 世界大戰의 직전까지만 해도 經濟의 急進論者이건 保守論者이건 굳게 믿었던 확신, 즉 체제의 선택은 自由放任의 資本主義와 完全社會主義 둘 중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그들을 혼합한 형태나 중간형태는 있을 수 없다고 하던 믿음이 收斂論의 등장과 함께 무너졌다라는 사실이다.<sup>1)</sup> 따라서 南北韓의 理念과 體制는 노력에 의해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經濟體制는 經濟機構·經濟組織·社會構造·政治制度 등을 기준으로 類型化

\* 이 論文은 檀國大學校 1991年度 大學研究費에 의하여 研究된 것으로서, 1992年 8月 「國際 韓國人 經濟學者大會」에서 發表한 것을 修正한 것임. 아울러 匿名의 論文 審查者들의 有益한 書面論評에 대하여 深深한 感謝를 드린다.

\*\* 檀國大學校 農業經濟學科

1) Dalton(1978), pp. 183~184.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이념을 중심으로 한 가장 대조적인 두 경제체제인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각각의 장점을 수용하고, 단점을 버리며, 이를 창조적으로 止揚・補完한 第3의 體制를 제기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第3의 體制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 social market economy)를 근간으로 하여 한반도의 풍토와 한민족의 전통적 뿌리인 共同體的 要素를 접합시킨 것이다. 즉 自由(資本主義의 理念)과 平等(社會主義의 理念), 市場과 計劃, 私有와 公有(例: 土地公概念), 私營과 公營, 私益과 公益 등 자본주의적 요소와 사회주의적 요소는 조화롭게 배합시켜야 할 대상이지 擇一의 問題가 아닌 것으로 본다. 나아가 우리 고유의 傳統的 民族共同體・生活共同體의 要素를 復元・接木시켜야 한다.<sup>2)</sup>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남한의 경제정책속에는 이 요소 중 상당수가 이미 혼합되어 있으며, 세계 각국 특히 최근에는 蘇聯, 中國 및 東歐까지도 배합비율에 있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하나같이 混合體制 내지 收斂體制, 第3의 體制로 接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兩極體制의 偏向을 갖게 되면 統一論議조차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사실과 실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상대體制의 장점을 수렴하는 자세, 남과 북이 공히 기존의 체제가 갖고 있는 단점을 겸허하게 수긍하면서 이를 극복하려는 실천적 노력이 통일에의 초석이라고 본다.

본 논문을 구성함에 있어서 주제의 성격상 다를 수 없는 분야 내지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統一以後의 經濟體制이므로, 통일에 이르는 現實的 過程論이 생략되었다. 즉, 현재 남한의 국민・기업인의 정서와 북한의 인민・지도층의 인식이 일정정도 함께 변한다는 전제하에서 모색한 모델이다.

둘째, 남한 사회의 성격상 통일경제는 정치민주화와 재벌 등의 경제력 집중

2) 원래 우리의 傳統的 村落構造는 '마을'이라는 공동체였고,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는 '契'라는 共同體가 성행하였음. 1960年代 이후에도 信協 등 자생적 협동조합이 뿌리를 내렸고, 1980年代 하반기부터는 한살림조합 등 生活協同組合이 태동, 발전되어 왔음. 따라서 統一經濟體制는 小集團의 凝集力과 力動性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작은 공동체 내지 協同組合部門(Cooperative sector)을 활성화시켜, 私經濟部門(Private sector)과 公經濟部門(Public sector)의 한계를 보완・조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해서는 張原碩・鄭勝和(1992(a)), pp.153~172, 參照.

문제의 합리적 해결, 주변강대국의 영향력에 대한 지혜로운 대응이 선결 내지 동시적으로 진행될 때에만 가능하다.

셋째, 存在論的 접근보다는 통일과 민족화합이라는 當爲的 접근에 더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넷째, 1950年代부터 東·西獨 關係에서 보는 바와 같이 南·北韓의 關係도 개방적인 세계체제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게 되면서 민족경제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논의를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

다섯째, 통일에 관련된 경제학계의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論文은 巨視的·總體的 접근으로 마무리하고, 微視的·分野別 연구는 다음의 課題로 남겨둔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은 紙面의 제약상 축약 또는 생략하였으므로, 關心人の 이해를 총족시키기에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이상의 전제하에서 논문의 구성은 체재모색을 위한 論點을 究明하고,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내용을 정리(III)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시장경제를 개조한 제3의 체제를 통일 이후의 사회경제체제로서 구명 제시(IV)하고자 한다.

## II. 體制 模索을 為한 論點

### 1. 兩 體制의 長短點

理念形 經濟體制로서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각기 장단점이 있는 바, 통일이후의 경제체제는 兩體制의 단점을 버리고 장점만을 채택, 接木·發展시켜야 한다. 이는 勞動과 資本의 속성이라든지, 인간존재의 불완전성, 그리고 '經濟秩序 實驗의 世紀'라는 금세기의歷程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며, 냉전종식의 분위기와 함께 그 가능성성이 높은 것만은 사실이므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될 일이다.

#### 1) 資本主義의 長點

##### ① 自由와 創意의 發現

서구에서 확립되어 전세계로 확장되어간 資本主義는 封建的 秩序를 타파하면서 封建制度에서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身分的 隸屬關係를 타파하고,

인격의 존중과 자유를 高唱하면서 개인의 해방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資本主義는 중기기관, 방적기, 철도의 발명과 보급으로 전례 없는 生產力의 發展을 수반하여 인간의 생활을 보다 풍부하고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따라서 자본주의정신은 원래는 인간해방(Befreiung der Menschen)이었다.<sup>3)</sup>

이로부터 오늘날까지도 인정되고 있는 자본주의체제의 장점으로는 市場機構의 機能, 消費者選擇의 自由, 職業選擇의 自由, 企業活動의 自由와 經濟主體의 創意力 刺戟 등이다.

## ② 不斷한 生產力 發展

資本主義의 전개과정에서는 일정시기의 위기나 공황단계를 제외하고서는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는 가장 기초적인 生產力의 發展이 不斷히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윤은 資本運動의 목적이고,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윤의 원천이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가치에 있으므로 보다 많은 잉여가치의 생산과 수취를 항상 도모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잉여가치의 증대는 노동일의 연장, 勞動強度의 강화라는 絶對的 剩餘價值의 생산에 의한 방법 외에도 勞動生產性의 향상으로 全體勞動時間에서 必要勞動時間 을 상대적으로 줄임으로써 相對的 剩餘價值의 생산이라는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해진다. 특히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에 의한 방법은 勞動日과 勞動強度 등을 둘러싼 노동의 저항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본에게는 보다 세련된 이윤의 收取方法이 되기도 한다.<sup>4)</sup> 따라서 새로운 생산방법의 도입이 촉진된다.

둘째, 資本間의 競爭에 의해서 자본에게 새로운 생산방법의 도입이 강제되어진다. 즉, 자본주의하에서 시장의 원리는 보다 싼 商品을 生產하도록 資本으로 하여금 강제하는데, 이는 價值法則의 작용에 의하여 利潤의 再分配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상품은 생산에 투여된 노동량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 것

3) 張原碩(1985(a)), p. 119.

4) 金秀行譯, pp. 521~531.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獨占資本主義段階에서 그 전형을 봄.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는 人間資本이 중시되고 經營者革命과 技術開發에 의하여 상당부분 수정의 여지가 있음. 그리고 21세기는 정보와 지식 등을 포함하는 software와 humanware가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므로 그 비중은 더욱 큰 변화를 보일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傳統的 利潤追求에 카니즘에 의존하는 舊時代의 殘滓가 남아 있게될 것임.

이 아니라 社會 平均的으로 필요한 노동량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보다 나은 생산방법을 도입한 資本은 그렇지 못한 資本이 생산한 價值의一部를 收取하여 축적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特別剩餘價值의 生成과 消滅 메커니즘으로 인해 새로운 생산방법의 도입은 자본에게 사활의 문제가 된다.<sup>5)</sup> 왜냐하면 낡은 생산방법을 계속 유지하는 자본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이다.

### ③ 危機對處能力의 增大

資本主義의 危機는 武力이나 武力外의 壓力에 의한 海外市場의 確保 또는 國家介入에 의한 國내경기의 활성화를 통하여 극복된다. 重商主義時代 以後列强들의 식민지 확보경쟁, 兩次大戰의 발발을 보이지 않게 사주한 독점자본의 행태, 강대국의 논리가 지배하는 오늘날의 국제교역의 내용이 전자의 예이며,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진영의 세계공황을 Keynes정책으로 극복한 예가 후자에 속한다. 전자의 경우는 부도덕 내지 非人間的 物神性(fecticism)의 대표적인 예이고, 후자의 경우엔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부분은 있으나, 복지정책의 강화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 2) 資本主義의 短點

### ① 經濟力集中에 의한 競爭의 制限

資本主義下에서는 生產力의 發展으로 資本集積과 동시에 끊임없이 다수의 자본가를 도태시키고 소수의 대자본으로의 흡수 즉, 資本의 集中 내지 經濟力集中이 명행된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자리를 잡았고,<sup>6)</sup> 이것이 공정경쟁과 시장경제의 왜곡,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 최근 한국경제의 현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經濟不安 내지 經濟危機를 일으킨다.

### ② 社會的 葛藤의 深化

生產力의 發展은 生產의 社會化를 유도하지만, 자본주의적 관계를 확대재생산으로 이끌어낸다. 다시 말해서 복지정책이나 경제정의가 충분히 정착되지 못한 우리나라와 같은 賤民資本主義 메커니즘하에서는 富益富 貧益貧의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확대재생산되는 勞動者階層의 狀態는

5) 特別剩餘價值의 창출과 소멸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은 富塙良三(金茂洪譯, 1984), pp. 102~104.

6) 姜哲圭·崔廷杓·張志祥(1991), pp. 15~250.

利潤의 收取라는 자본의 본래적 요구에 종속되게 되어 있다.

아울러 자본의 無限追求慾은 農業·農民問題를 방치 내지 조장한다. 1970年代만해도 30만명의 離農人口가 1991년엔 59만명(全 農民의 9%)이었고, 이후에도 이동홍수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勞動問題, 都市零細民問題, 都市의 過密化 現狀, 교통·주택·공해·교육·범죄문제가 연쇄적으로 야기되는 사회적·지역적 갈등이 심화된다.

### 3) 社會主義의 長點

#### ① 平等

社會主義는 資本主義가 이룩한 經濟的 土臺를 기초로 하여 자본주의의 矛盾을 극복하며 인간다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현상에서 출발하였다. 여기서 '人間다운 社會'란 동물계의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 대한 새로운 세계의 모색을 의미한다. 자유라는 이름 아래 不平等, 收奪, 資本에의 從屬, 農民과 中小 商工人的 몰락 등을 청산하여 착취없는 평등사회를 만들자는 것 이었다. 社會主義下에서 소득분배의 공평성이 중대하였으며, 社會保障의 실시도 적극적으로 전개된 편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平等이라는 것이 貧困의 平等化나 下向平等化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어디까지나 生產力의 發展과 國際競爭力を 저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의 평등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실 국제사회에서는 이념보다는 국익이 앞서므로 국제경쟁에서 뒤떨어지게 되면 종속 내지 新植民地로 轉落되는 등, 약육강식의 법칙이 냉엄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순수이념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평등없는 자유가 불합리한 것처럼, 자유 없는 평등도 무의미한 것이다. 따라서 效率이 전제된 衡平, 自由와 平等의 理念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명제이다.

#### ② 所有와 計劃의 調和

러시아에서의 社會主義의 건설과정이 낙후되어 있는 경제상태를 일시에 발전시켜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은 당연하였다. 혁명 초기의 혼란과 內戰, 新經濟政策을 거쳐 이른바 社會主義의 大轉換이라고 불리우는 스탈린의 社會主義의 工業化 및 農業集團化政策은 낙후되어 있었던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은 본래 시장원리를 폐기하고 대신에 각종 생산수단의 사회화조치와 강력한 중앙집권에 의한 전국적인 계획에 의거

하여, 生產・交換・分配를 규제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sup>7)</sup>

社會主義的 所有와 計劃經濟는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 내지 一定段階에서는 효율적이다. 그 실증적인 예는 1920年代와 1930年代 러시아가 서방진영보다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하였고, 중국도 모택동革命 以後에야 安定과 發展이 있었으며, 北韓의 계획경제도 성공하여 1인당GNP면에서 1970年代 초반까지 南韓보다 경제력이 앞섰다는 점<sup>8)</sup>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1917년 볼셰비키 革命以後 社會主義圈이 수행한 민주혁명, 협동화, 사회화, 구체적으로 所有制度의 改革과 計劃經濟의 여파는 資本主義圈의 發展에 촉매역할을 한 면도 있다. 예를 들면, 서구 각국에서 勞動과 資本의 大妥協, 市場과 政府關係의 再定立, 우리나라에서의 농지개혁과 경제개발계획 등은 社會主義的 反作用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는 資本主義陣營에서는 경제계획 또는 정부의 경제개입을 유인한 점도 있어 자본주의의 모순을 치유하는데 일조하였다. 결국 所有・計劃・市場의 調和를 견인해낸 것이 社會主義의 功이라고 할 수 있다.

#### 4) 社會主義의 短點

##### ① 民主主義의 缺如

社會主義國家는 상당부분 경제과정의 비민주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탈린적 社會主義 建設過程은 국가기구가 극도로 중앙집권화되고 비대화되어 자치의 성격은 별반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國家機構內에는 경제관리와 행정을 위한 기구뿐 아니라 억압기구조차 발전하였다. 또한 공업부문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엄격한 위로부터의 통제가 부과되었다. 北韓 역시 黨이 장악하고 있고, 人民에 의한 상향식 민주제는 아니다. 물론 南韓의 경우도 기층민의 의사는 거의 배제되고 있다.

##### ② 經濟的 인센티브不足에 의한 生產力停滯와 效率性低下

位階的인 社會構造가 정착되어 가는 가운데 아래로부터의 창의성은 위에서 하달되는 명령을 보완하는 역할에 그친다. 勞動者階級, 그리고 부분적으로 農

7) 스탈린期에서의 社會主義的 工業化와 農業集團化에 대한 상세한 內容은 서울사회과학 연구소(1991), pp. 175~202 參照。

8) 이에 대한 統計는 推計方式에 따라 다르나, 1人當GNP에서 남한당국은 1969년부터, 黃義珏은 1987년부터 남한이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하였고, 미국 CIA는 1975년까지 總 GNP규모에서 북한이 남한보다 컸다고 주장함. 黃義珏(1992), pp. 140~141.

民의 일부는 상당한 특권을 누렸지만, 그들의 支配階級으로의 전화는 불충분한 수준에 머물렀다. 그들은 生產의 主人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유기업의 고용인이라는 성격을 더 강하게 띠고 있다. 따라서 자발성을 계속 유도하여 生產性向上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였으며, 특히 1960년대 이후 蘇聯에서는 이전의 급속한 경제성장도 둔화 내지 정체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生產力의 停滯와 效率性의 低下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이와 관련시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객관적 인식이다. 인간은 일정기간동안 열정과 이념으로 충만되어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일 수는 없게 되어 있고, 권력이나 권한의 소유가 상당기간 지나면 부패와 부정으로 연결되는 속성을 가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動機附與가 必要하게 되는데, 이는 곧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경제적 유인책이 가장 實效性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념이나 道德的 貞操는 일부 사람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고 다수의 대중은 기본적으로 이기심을 갖기 때문에, 社會的 共同善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본능을 충족시키지 않고 제약하면서 생산력에 연결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더라도 소련, 중국, 북한의 경우 혁명기 일정시기까지는 이념적 무장이 경제건설에 직접적인 動因을 제공하였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官僚테크노크라트라는 새로운 단계(Nomen Klatur)로의 부상이나<sup>9)</sup> 黨官僚들의 부패상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社會主義 建設過程에서 農業에 대한 파멸적 영향은 직접적이면서 지속적인 것이었다. 콜호즈는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工業組織을 기계적으로 차용하여 건설되었다. 농민대중의 심리와 물질적 관심을 고려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길로 인도한다는 協同組合構想은 사실상 폐기되었다.<sup>10)</sup>

9) Djilas(1969), pp. 3~12.

10) 10月革命 이후 Lenin은 勞農同盟의 強固화를 위하여 자신의 농업정책 구상의 일부를 수정하였음. 특히 NEP時期에는 勞農同盟의 連繫고리로서 농업부문에서의 농업협동조합을 구상하였음(Lenin(1921~1923) 參照). 이에 대한 現代的 評價로서는 『世界經濟國際關係』第82集을 參照).

그러나 스탈린期의 사회주의 건설과정은 농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중공업 우선의 공업화과정이었음. 이 시기에 농업집단화가 추진되었지만, 비상조치에 의해 강압적으로 탈취하는 방식을 취하였음. 이는 협동조합의 중요한 원칙인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이었고, 이후 소련에서의 協同組合이 行政機構의 하부조직으로 현상화되기에 이르렀음. 이러한 방식은 현재까지도 농업부문의 停滯性이 지속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 이 널리 인정되고 있음.

## 2. 社會主義 經濟改革의 示唆點

이와 같은 스탈린式 社會主義 건설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1960年代以後의 經濟改革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인 쟁점을 낳게 되었다.<sup>11)</sup>

첫째, 生產手段의 社會主義的 所有形態가 곧바로 社會主義的 生產의 組織化로 이끌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스탈린은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을 소유론적 관점에서 사회주의적 국유화 및 협동조합적 소유라는 두 가지 형태의 사회주의적 소유의 확립을 생산력의 성격에 대한 생산관계의 일치로 보고, 이를 生產의 再組織化로 파악하고 있으며, 단지 양적 비율로만 파악된 집단화 정책의 완료와 더불어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완성을 선언하고, 나아가 階級敵對의 消滅, 全人民의 國家로의 轉化 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所有論的 觀點은 生산과정에서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한 채 비민주적인 요소를 잔존시키는 것으로 지적 받고 있다.

둘째, 스탈린은 사회주의하에서도 엄존하고 있는 商品-貨幣關係를 사실상 부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중앙계획기구에 의한 전국적인 경제관리라는 사회주의적 경제원리에서 파생되는 것인데, 생산·교환·분배·소비 등 일련의 經濟過程이 지령적 계획에 의해 조직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計劃機構에 의한 경제의 조직·관리는 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제반 메커니즘의 결여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시장기구의 작용을 철폐시키지는 못하였다. 다시 말해서 중앙계획기구에 의한 全國的인 경제관리는 이를 위한 전반적인 생산수준의 향상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경제관리 시스템의 완비를前提로 하는데 비해, 蘇聯에서의 計劃經濟의 실시는 전국적인 會計·監督을 위한 物的·人的資源의 완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실행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각한 경제의 非效率性을 초래하고, 勞動生產性의 향상을 위한 제반 동기의 결여가 초래되었다.

1960年代 중반이후의 蘇聯과 東歐의 경제개혁은 이러한 일련의 결함을 치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주의경제에로의 市場經濟的 要素의 도입에

11) 1960年代부터 停滯 또는 沈滯局面에 접하게 되었던 蘇聯經濟의 회복을 위한 여러가지 經濟改革은 이론과 스탈린주의 矛盾의 克服을 기본적 방향으로 설정한 것임. 이는 페레스트로이카로 지칭되는 극히 최근의 總體的인 改革過程으로까지 지속되고 있는 爭點이라 하겠음. 스탈린주의의 이론적 내용과 이후의 사회주의 경제이론의 쟁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개는 申鉉準(1990) 參照.

의한 ‘計劃과 市場의 結合’이라는 구상이 많은 논자에 의해 주장되었다. 여기서 특히 Brus의 논의가 주목되는데, 그는 종래의 集權的모델을 대신하는 分權的 모델을 제창하고 그리함으로써 ‘市場메카니즘을 內在化시킨 計劃經濟’를 주장하였다. 즉, 기존의 소련사회주의 계획경제모델을 집권적 모델의 대표적인 예로서 거론하면서, 수요에 대한 생산의 非伸縮性, 기업에 의한 낭비의 증대, 기업 및 산업의 자력발전의 배제, 경제적 자극유인의 脆弱性, 국가기구와 경제기구의 官僚主義化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한다. 그는 사회주의의 현실에서의 시장메카니즘의 활용을 통하여 계획의 분권화를 추진하여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sup>12)</sup>

시장기구의 활용은 集權的 計劃經濟에서 다음의 두 가지 주요 난점에 기인하고 있다. 첫째, 실제의 정보처리능력과 처리해야 할 정보량과의 사이에 현저한 不均衡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계획경제의 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즉, 개별 기업에서의 투입과 산출, 기업상호간에 있어서 생산재 유통 및 국민으로 소비재 공급을 그 세목에 이르기까지 集權的・行政的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극히 한정된 시간내에 방대한 양의 情報 收集・加工・傳達이 행해지지 않으면 안되는데 중앙계획기관은 과거나 현재나 그만큼 커다란 정보처리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둘째, 종래의 蘇聯型 計劃・管理制度에도 그 나름대로의 經濟的 刺激制度가 도입되어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이해와 사회전체 이해의 조화로운 결합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의 배반이 상당히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계획경제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sup>13)</sup>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일컬어지는 ‘計劃經濟’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생산력 발전수준에 도달해 있지 못하여 인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시장경제적 요소와의 결합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계획과 시장의 결합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는 모든 사회주의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역사적으로도 計劃과 市場의 結合方式은 소련에서의 ‘戰時共產主義時期’와 ‘新經濟政策(NEP)期’의 양모델에서 政策機制가 상호교체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일례로 소련에서 1965年 이후 실시되었던 경제개혁은 1960年代末부터 이전의 전

12) 鶴岡重成 日譯, Brus(1961), pp. 105~115.

13) 野尻敏監 日譯, Kosta(1978), pp. 99~103.

통적인 계획경제로 회귀하는 듯하였다. 그러다가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으로 경제개혁이 추구되어 현재는 소련계획경제는 崩壞되어 전면적인 시장경제로의 전환으로 치닫게 되었다.

### 3. 經濟正義 實現을 위한 基準

이상과 같이 정리될 때, 통일이후의 바람직한 체제를 모색함에 있어서 지녀야 할 태도는 ‘體制의 優越性’이라는 冷戰的 思考方式으로부터 탈피하여, 共存・交流・協力(第1段階), 收斂(第2段階), 統合・創造的 우리식 止向(第3段階)이라는 統一指向의 노력을 부단히 경주해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대중의 자유와 창의가 발현되면서 민주적이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시도로서 생산력발전의 우위와 효율성이라는 자본주의 장점 및 협平性에 입각한 소득분배와 주민복지와 실현이라는 社會主義의 장점을 채택하면서, 각각의 단점을 치유,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의 方向性으로서 經濟正義라는 概念<sup>14)</sup>을 새로이 해석할 필요가 있다. 經濟正義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인간이 인간다운 經濟的 生活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권의 보장과 아울러 땀흘린 만큼 소득이 얻어지는 활력 있는 구조가 실현되어 있는 사회에서의 경제라는 의미가 현대적 의의를 갖는다. 왜냐하면 인류가 지금까지 이룩한 生產力의 發展水準이 우리 모두에게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일부에게 偏重되게 分配되어 대중이 勞動의 正當한 對價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現實經濟에서 이의 치유는 거의 모든 국가가 안고 있는 根源的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정의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交流可能品目과 產業再配置를 중심으로 한 巨示經濟的 次元의 논의전개가 극심하게 이질화된 남북한의 經濟構造와 상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통합을 이끌어낼 수 없다. 微示的 次元에서는 균형있는 복지의 실현을 위한 이러한 經濟正義의 내용이 보강되어야만 統一以後의 경제구조가合理性을 떨 수 있다는 것과 관련되기도 한다.

經濟正義의 개념에서는 그 본질상 분배에서의 價值判斷이 개입될 수 밖에

14) 경제정의는 철학과 경제학의 영역에서 너무나 많은 개념의 規定이 있으나, 이 論文에서는 總論의 性格을 가지는 것이므로 단순화시켰음.

없다. 그 이유는 이른바 ‘파레토 效率性’에 立脚하면, 주어진 자원의 양, 자원 배분상태, 기술상태에서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최대한 생산하여 분배한다고 하더라도, 最適狀態라는 均衡點이 여러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最適均衡點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最適生產을 유지하면서 分配面에서 정의로운 상태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로 귀착된다. 지금까지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각각의 원리와 발전과정을 회고하건대, 現代的 의미에서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寄與度의 原則, 社會的 合意의 原則, 必要의 原則이 관철되어야 한다.<sup>15)</sup> 이들 原則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寄與度의 原則

實質所得의 生產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所得의 分配를 決定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는 기준을 말한다. 생산에 참여하는 것에는 노동력뿐만 아니라 자금·공장·토지와 같은 재산도 있기 때문에, 이자·이윤·임대료 및 지대와 같은 財產所得도 생산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생산적인 소득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지, 주택 및 증권(채권과 주식)의 價格上昇에 따른 差額에 의한 分配의 변화이다. 證券의 價格上昇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어서 간접적으로 생산을 보다 원활히 하는 것을 유도하므로, 증권의 가격상승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생산에 의한 對價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이나 토지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얻는 이득은 생산에 전혀 기여함이 없이 단지 所有하고 있다는 사실에만 根據하여 얻는 것이므로 정당한 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土地價格의 上昇은 공장이나 도로 등 생산에 필수적인 시설들의 공급을 어렵게 하여 오히려 생산을 방해한다.<sup>16)</sup> 그러므로 ‘土地公概念’의 도입이 必要하다고 본다.

또한 寄與度의 原則속에는 각 생산요소가 갖는 생산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生產性에 따라 分配하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이 원칙에는 각자에게 주어지는 기회의 균등성을 포함한다. 즉, 기회의 균등에 의하여 각자는 자신의 능력을

15) 이와 관련하여 經濟正義를 판단하는 기준을 貢獻度·平等度·必要度의 원칙으로 나누기도 함. 자세한 것은 姜哲圭(1992. 6).

16) 李根植(1990), p. 47.

최대한 개발하고 발휘하도록 하는 經濟的 動機를 생성시키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사회주의가 안고 있었던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생산수단의 사회화로 일컬어지는 국유화된 社會主義社會에서는 노동에 照應하여 분배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社會主義 社會에서도 생산력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또는 복잡노동과 단순노동에 따른 분배의 격차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에서 성과에 대한 刺戟要因의 缺如는 창의와 자발성을 적극 유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산과정에서의 능률저하, 무관심, 책임방기로 이어져 오히려 '失敗의 社會化'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혹평 받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이 원칙은 능력에 따른 분배, 즉 能力의 原則도 포함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初期資產(initial endowment) 또는 상속에 의하여 상당부분이 능력과는 상관없이 분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탈세, 탈루를 방지하는 등 相續・贈與稅의 철저를 기하는 租稅政策이나 共同相續制 등을 통해서 치유가 가능할 것이다.

## 2) 社會的 合意의 原則

그런데 생산에의 기여도에 따른 분배의 경우, 生產參與者의 範疇와 寄與度의 크기를 측정하는 척도가 학파에 따라 다양하다. 결국 이해당사자간 또는 민주적인 합의에 의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賃金 決定에 있어서는 노사간의 합의, 농산물 가격결정에 있어서는 農民・消費者・政府間의 합의, 부동산 투기와 금융가명제 등 地下經濟問題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야지, 힘있는 소수의 경제력이나 정치력에 의하여 다수가 희생 내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經濟不正義이다. 이를 階層的・階級的 問題와 관련시켜 보면, 부르조아 독재나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缺陷을 止揚, 機會의 均等, 소외계층 없는 參與民主主義에 입각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부연하자면, 獨逸에서의 勞使關係制度,<sup>17)</sup> 즉 노동자의 經營參加, 勞使 共同決定制度등은 產業民主化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고, 오스트리아 등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채용하고 있는 社會組合主義(Socital Corporatism)<sup>18)</sup>에 입각한 勞動者・農民團體政策은 민간단체와

17) 曹尤鉉(1992), pp. 382~394.

18) 張原碩(1992(b)), pp. 190~194 및 pp. 208~211 및 Schmitter(1979), pp. 20~22.

정부와의 협력·견제·보완관계의 수립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3) 必要의 原則

必要의 原則은 노약자, 병자, 신체 장애인, 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해서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는 급부를 사회적으로 보장하여 共同體社會, 共同體國家로서의 본질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사회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실에서 이 원칙은 소외계층에서의 절대적 빈곤을 퇴치하는 것으로 현상화된 것이다. 사실상 이들에게 알맞는 일자리를 마련하거나 最低生活을 보장하는 일은 인간적인 사회의 전설을 위한 기본이고, 사회통합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이란 풍요로운 주위환경을 접하면서도 자신만이 최저생활도 영위할 수 없는 限界狀況에 처하게 되면 윤리나 도덕이 마비되기 때문이다. 中進國 以上의 국가들 중에서 絶對貧困層을 방치하는 나라일수록 犯罪率이 높다는 점이 그 실증적인 예이다.

또한 이 원칙은 생산력이 발전해감에 따라 생활에 필요한 最小限의 物質的 慾求의 充足이라는 차원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는 생활이 가능하도록 醫療, 教育, 文化 등 추가적인 욕구충족까지도 고려하게 된다.

이상 3가지 원칙을 감안하여 經濟正義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면, 생산에 기여 한만큼 분배되어야 하고, 寄與度測定이 어려운 부분은 利害當事者間 또는 민주적인 사회적 합의에 의해야 하며, 노동능력이나 기회가 없거나 적은 사람에 대해서는 生存權保障의 차원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자는 것이다.<sup>19)</sup> 아울러 GNP수준에 상응한 의료, 교육, 문화 등의 욕구충족까지도 배려하는 것이다.

이상의 3가지 원칙에서 능력의 원칙을 포함하는 寄與度의 원칙은 計劃經濟下에서는 충분히 실현될 수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지적하였다시피 계획경제下에서는 각 개인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충분히 유도할 수 없고 설사 유도된다고 하더라도 계획경제가 가능할 수 있는 情報의 傳達과 處理能力이 충분할

19) 생존권이 보장되고 絶對貧困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해도 相對的 貧困感이 커지면 葛藤要因으로 작용함. 여기서 말하는 상대적 빈곤은 所得上의 格差로 인한 것만이 아니고, 자산, 권리, 자유, 권력, 기회 등 소위 社會的基本材에 대한 욕구충족상의 차별에 기인함. 혹은는 相對 貧困을 最小化하는 것도 경제정의를 규정하는 요소로 보기도 하나, 이는 尺度의 기준설정과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社會民主化와 價值觀의 領域에서 해결함이 현실성을 가지므로 여기서는 제외시켰음.

만큼 生產力水準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여도와 능력에 따른 분배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私有財產制度下에서 競爭을 주내용으로 하는 市場原理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시장경제에서의 경쟁은 끊임없이 소외계층을 낳고 있으므로, 이들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의 실시가 필요하다. 사회보장의 수준은 구체적인 생산력발전수준, 역사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에 의하여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그 결정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필요의 원칙은 모든 분야에서의 民主主義가 정착되어야 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 III. 獨逸의 社會的 市場經濟의 內容

統一 以後의 경제체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기본권이 확립되는 가운데,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실현되면서, 각 개인의 경제행위가 全社會의 利益에 부합될 수 있어야 한다. 즉, 경제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寄與度의 原則, 社會的 合意의 原則, 必要의 原則이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體制摸索은 가장 최근 통일을 이룩한 西獨의 경우를 고찰해 봄으로써 많은 시사점을 얻으리라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Köppinger의 논문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sup>20)</sup>

#### 1) 社會的 市場經濟의 原理

‘社會的 市場經濟’의 原理는 1940年代에 Armack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Erhard에 의해서 經濟政策으로서 구현된 것은 널리 잘 알려진 사실이나, 그 기원은 1920年代와 1930年代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빚어진 여러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독일에서는 ‘秩序가 잘 잡힌 自由主義’를 지향하는 학파가 태동한데서 시작되었다. 그 대표주자인 Eucken은 이를 ‘秩序自由主義(Ordo-Liberalism)<sup>21)</sup>라는 개념으로 정리하였는데, 이 개념은 시장메카니즘이 산업사회에서 경제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가능한한 간섭받지 않고 존속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독점이나 소외계층의

20) Köppinger(1992), pp. 4~8.

21) 朴世逸(1991), pp. 31~48에서는 우리의 경우에 적용, 제3의 길을 모색.

궁핍을 방지하고 公正競爭秩序를 유지하는 틀 위에서 존속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즉, 모든 개인이 자유를 누리면서 인간의 尊嚴性과 발전을 지향할 수 있도록 시장원리가 계속적으로 보장되면서도 국가의 秩序維持의 介入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자유주의적 경쟁이 스스로의 작용결과 ‘豐饒 속에서의 貧困’이라는 1920年代와 1930年代의 ‘經濟大恐慌’이라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부활시킬 것을 제시한 것이다.

秩序自由主義의 영향을 받아서 1940年代에, Erhard와 Armack은 나치독일 이후 독일이 취해야 할 사회경제적 질서 모델로서 ‘社會的 市場經濟’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sup>22)</sup>, 이는 서독경제건설의 주요 방향키로서의 역할을 했다. ‘社會的 市場經濟’의 원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市場과 競爭이라는 기구를 원칙적으로 유지·강화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시장기구의 伸縮性때문이다. 즉, 극도로 복잡하게 얹힌 인간의 소비 및 노동의 욕구와 가능성들을, 기타 생산요소들의 過·不足을 서로 조정시켜 주고,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반응되는 다른 조정메카니즘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보다 나은 수입 혹은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合理的行動方式이 競争 메카니즘과 價格메카니즘을 통해 결국은 국민경제의 생산력 증대와 공공의 후생증대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을 그 어떤 다른 메카니즘에 기대할 수 없다.

둘째, 경제활동의 각 주체 및 이익집단과 사회간에 형성된 社會的 同伴關係를 지적한다. 여기서 사회적 동반관계란 쌍방의 이익을 정당하게 인정하는 합의된 行動方式을 도출하기 위해, 서로의 합의에 기초하여 규정한 평화롭고 바른 社會的 協定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참여자와 관련자들을 결정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상호간의 連帶的 도움을 위해 동일한 利害關係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결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労使自治制가 대표적인데, 임금, 노동시간, 기타 여러가지 노동조건들에 관해 독자적으로 交渉할 勞動組合과 使用者團體의 자치권, 경영에 관한 결정시 노동자의 공동참여, 노동자의 생산자본에의 참여, 그리고 연금보험이나 실업보험, 혹은 의료보험

22) ‘社會的 市場經濟’가 서독 경제정책의 이념으로서 자리잡게 된 배경에는 스탈린치하의 社會主義의 計劃經濟가 인민의 경제적 만족을 가져오지 못한데다가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실시된 공업화 및 농업집단화과정에서 일인독재로 이어지고 있는 것 등임.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rmack(1947)과 Erhard(1947)参照.

등 각종 社會保險制度의 保険料負擔을 노동자와 기업이 분담하기로 하는 등의 自治를 행하는 것이다.

셋째,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의 조직적이고도 책임있는 개입을 들 수 있는데, 이 점은 이전의 자유방임주의적 시장경제와 가장 크게 구별되는 점이다. Armack에 의하면, “社會的 市場經濟는 약한 국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강한 民主主義 國家를 요구한다. 우리는 그 속에서 競爭秩序의 순기능이 가능함을 본다”라고 하였다.

## 2) 國家의 役割

이상과 같이 정리할 경우, 이전의 자유주의적 시장경쟁과 다른 점은 競爭에서의 公共利益을 함께 고려하는 것과 競爭秩序維持를 위한 國家의 介入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社會的 市場經濟’는 국가의 개입을 합리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國家의 役割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첫째, 競爭을 保障하는 것이다. 효율적인 경쟁질서가 확립되어 있어야, 다시 말해서 개별 공급자와 개별 수요자의 독점적 시장지배력이 배제되어 있어야 비로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남용되거나 불공평하게 행사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선다는 것이다. 국가가 市場競爭을 보장하고 獨占的 市場支配力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그 경쟁이 명실공히 소비자들의 후생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유도되도록 적절한 규칙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그 규칙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것 등은 결코 시장경제에 대한 侵害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시장결과의 矯正과 사회적 균형의 유지에 있다. 기능이 잘 유지되는 시장이라 해도 시장메카니즘에 의하여 각 경제주체들에게 분배되는 소득은 개인의 성취 혹은 寄與度를 경제적으로 測定·評價해 내고 그에 비례하여 배분했을 때에 한해서 공정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인간은 그의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기본욕구와 함께, 자신의 成就能力이나 기여도에 대해 평가받기에 앞서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욕구에 대한 보장은 시장메카니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고 國家의 秩序次元의 介入에 의해 교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는 재정운용과 공적 보험제도를 넘어 시장과정에서 형성되어 나온 이득을 育兒手當, 賃貸補助, 年金, 社會援助 등 社會的 目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장과정에서 수행되는 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다. 국가는 社會政策이라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개인이 시장에서 조달해야만 하거나 사회적 원조로부터 얻는 성과와에 많은 사회정책적 과제가 존재한다.

넷째, 특정 조건하에서 시장원칙과 경쟁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市場過程, 즉 경쟁의 질서가 인간의 자유로운 발달을 위협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경쟁을 제한하기까지 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의 예는 環境破壞에 대한 비용의 산출과 징수, 노동법과 災害防止法의 제정에서 잘 나타난다.

### 3) 具體的인 政策

위와 같은 ‘社會的 市場經濟’의 秩序自由主義 思想下에서 전후 서독에서는 ‘健全通貨原則’의 유지, 독과점저지를 위한 ‘競爭制限防止法’의 제정, 노동자를 위한 ‘財產形成政策’, 기술이나 입지, 환경에 관계되는 ‘經濟基盤政策 (Wirtschaftsgrundlagenpolitik)’ 등에 노력해왔다. 자유경쟁의 법적·형식적 구조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실질적 조건에 미치는 諸政策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國家施策은 원칙적으로 競爭秩序「틀」의 형성이나 유지, 즉 ‘經濟秩序政策 (Wirtschaftsordnungspolitik)’으로 그쳐야 하는 것이 강조되고, 經濟過程의 計劃化에는 소극적인 태도가 취해졌다. 일상의 경제과정에서 향해지는 ‘經濟經過政策 (Wirtschaftsablaufspolitik)’의 확대는 전면 中央管理의 체제로 이끌 위험을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구체적인 정책은 계획화의 단점, 즉 非民主性과 全體主義로의 초래 가능성<sup>23)</sup>을 경계하면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확고한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 IV. 統一 以後의 經濟體制

### -우리식 社會的 市場經濟-

우리식 사회적 시장경제는 현존하는 경제체제 중 비교적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독일의 社會的 市場經濟를 한반도 실정에 맞도록 援用하고, 우리의 전통적 物質構造와 精神構造를 가미하여 제3의 체제를 구상해 본 것이다. 즉, ① 社會的 市場經濟, ② 所有公概念, ③ 國家共同體·社會共同體 建設을 위해 가

23) Hayek(1944), pp. 56~71 및 pp. 88~100.

미한 cooperative economy(第3世代 協同組合運動方式)가 통일적으로 이루 어진 경제를 말한다.

이러한 구상은 제II장에서 살펴본 논점이 시사하는 바, 우리가 모색해야 할 통일 이후의 경제체제는, 첫째 極端의 冷戰論理와 사고를 버리고 이념형 경제 체제로서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하여야 하며, 둘째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교훈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셋째 경제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체제여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第III章의 社會的 市場經濟의 내용은 서독의 基民黨(CDU)이 추구한 체제이지만, 1967년 이후 브란트가 이끄는 社民黨(SPD)과 1969년 이후 오스트리아의 社會黨(SPÖ) 등, 소위 유럽諸國의 사회주의정당들의 정책도 보수당의 그것과 공동소이하다는 점을 볼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대단히 크다. 즉, 獨逸이나 오스트리아의 경제체제에 대하여 南韓의 경우, 냉전논리를 벗어나지 못한 자본주의자의 눈에는 분배정책과 복지수준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로 보일 것이고, 北韓의 사회주의자는 당연히 자본주의로 치부할 것이다. 하나의 체제를 놓고 이처럼 상반된 견해를 가진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편향을 갖고 집착할 것은 못된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나 體制<sup>24)</sup>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을 중심에 놓고 사고한다면 기존의 체제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변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은 南韓의 체제와 국민을, 남한은 북한의 체제와 인민을 상호 인정·존중하고, 체제라는 外皮보다 構成內容物을 선택적으로 겸허하게 모색해 가는 것이 생산적이고 統一指向의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現段階에서 우선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문화의 전통과 민족적 유산을 바탕으로 한 主體의이고도 창조적인 ‘우리식 體制’를 복원·계승·발전시켜야 하겠다는 점이다. 다른 민족의 언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나’와 ‘너’라는 말 대신에 ‘우리’라는 말을 통용해온 言語心理的 뿌리와 생활은 다름아닌 協同文化와 共同體文化, 協同經濟와 共同體經濟가 곧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이며 삶의 바탕이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오늘날 극도의 利己主義와 個人主義, 수단과 방법을 가

24) 奇宇植 譯, D. Bell(1972), 李相斗 譯, 堀江忠男(1981), Galbraith and Menschikov(1988) 등 參照。

리지 않는 경쟁과 투쟁은 외래문화의 영향과 物質主義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공동체적 문화와 경제를 복원해 내어 민족적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일은 통일 이후 경제체제에 의한 構成要素로서 자리잡아야 한다. 따라서 所有制度의 경우에 있어서 公概念을 도입해야 하고, 경제체제로서의 協同組合主義(Co-operativism)<sup>25)</sup>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協同組合과 生活共同體의 원리가 경제部門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을 맺는 社會·文化·政治部門에서도 뿌리내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1. 社會的 市場經濟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歷史的 經驗에서 경쟁을 원리로 하는 시장기구의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인정됨을 앞에서 고찰하였다. 우리의 경우도 통일 이후의 경제체제로서는 社會的 市場經濟體制를 근간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의 自由競爭的 市場經濟위에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추구한平等理念을 구현시킨 中間形態로서, 兩體制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구성원의 경제행위에서 그의 자발성과 창의를 발현시키면서도 공공복리에 부합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통일과정이 서독으로의吸收였다는 시각도 있으나, 1990년도 서독의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액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7%(남한은 20.7%), 사회보장비가 중앙 및 지방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7%(남한은 4.3%)에 달하는 統計에서 알 수 있듯이 國家의 役割이 증대했다는 점에서 東獨의 경제체제가 이미 서독에서도 내용면에서 상당부분 수용되어 왔다. 즉, 서독의 社會的 市場經濟는 동독의 社會主義體制에서의 국가로의 所有集中과 그에 따른 計劃經濟의 실시가 부분적으로 수정·변용·포용되어 있고(이는 1960년대 이후 남한의 경제계획이 북한의 계획경제방법을 수정·변용한 것과 유사), 더 나아가 사회주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非民主的인 經濟運營·管理와 생산력의 停滯를 극복하였다.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또한 동독인의 경제상태가 서독의 越等한 경제력에 의해서 호전될 수 있어서 獨逸統一은 동독인에게도 보다 진보적인 내용을 지니게 되었다.

이와 같은 社會的 市場經濟를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援用해야 하는 바, 그

---

25) 張原碩(1985), pp.197~211.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競爭的 市場秩序의 활성화 즉, 계획경제에 비하여 市場經濟의 伸縮性과 效率性을 경제체제의 기본축으로 해야 한다. 여기서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빠뜨릴 수 없는 요소인 公正한 經濟體制의 확립이 절대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獨寡占規制와 財閥 등 經濟力集中問題의 해소 등에 의해 競爭政策의 촉진, 中央銀行의 독립과 貨幣價值安定을 위한 通貨政策, 불필요한 인·허가 사항의 폐지, 기업활동 및 행정분야의 책임원리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둘째, 社會的 合意制度의 정착 즉, 勞使共同決定制度, 농산물 정책가격결정에서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의 공동결정, 산업민주화를 위한 結社權의 존중, 관련자들의 참여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때 정부는 경제활동의 주체 및 이익집단과 사회간의 상충되는 부분을 調整·仲裁하여 합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한국사에 있어서 계층간의 갈등과 소외계층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참여와 협상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셋째, 국가의 組織的·民主的 개입 즉, 公正競爭의 촉진, 寄與度에 따른 분배, 물질적 기본욕구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욕구충족의 보장, 시장질서의 실패에 대한 치유정책 등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특히 獨寡占規制, 노동자를 위한 재산형성, 경쟁질서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없는 기층에 대한 社會福祉政策 등이다. 그리고 1972년 스웨덴 회의로부터 지난 6월 리우환경회의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모았던 環境政策에 대해서 광범한 정책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 종래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物質主義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그간 실증된 바와 같이 환경문제가 경시 내지 무시되어 왔다. 環境問題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인류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부분은 생산력의 持續的인 發展(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해서도 환경이라는 요소가 경시되어서는 안될 문제이므로 環境保全型 開發政策이 반드시 요구된다.

한편, 현실세계는 이념과 체제간의 경쟁의 시대로부터 生產力 競爭의 時代로 이미 돌입해 있고, 향후에는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생산력과 관련시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經營·技術·科學의 우위이다. 즉, 생산성은 과거처럼 노동력에 압도적인 부분이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재와 새로운 기술의 개발, 새로운 정보의 활용, 고도의 技術勞動力에 가장 많이 의존된다. 최근 사회주의권의 변화는 생산력 경쟁에서의 敗北가 결정적인데, 이는 社會主

義體制의 動態的 法則에 의거, 당이나 관료기술자 및 종업원들의 새로운 창의력과 자발성 내지 의욕이 결여된 데에 주원인이 있다. 전망하건대, 北韓도 改革·開放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남한과의 교통협력을 통해서 체제보다는 기술과 經營依存型 體制로 개편될 것으로 본다. 또한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美·日·EC 등의 經濟強大國들의 공세에 감당할 수 없으므로 어느날 하루아침에 붕괴될 위기까지도 예상될 수 있다. 물론 남한도 지난 30년간 지나친 政府依存型 企業形態를 보여왔으므로 이미 국제경쟁력에 뒤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南北韓 공히 전쟁과도 같이 경쟁이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점을 직시하고, 블록화·글로벌화 되어가는 世界經濟體制의 현실에 대한 대응이 고도화되지 않으면 民族經濟의 차원에서 함께 몰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로 software와 humanware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專門化·科學化·情報화 사회에 걸맞는 전문경영인, 기술노동자, 과학자에게 창의와 의욕을 자극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公正한 競爭의 原理와 規則과 秩序下에서의 市場經濟는 더욱 요구될 것이고 有用하다.

## 2. 所有公概念

이는 사유를 인정하는 가운데 소유권의 행사가 公共福利를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토지와 주택은 투기나 재산증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되고, 어디까지나 생산수단 또는 生活手段으로서 소유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土地公概念의 주된 내용이었으며, 이의 실시를 남한 국민의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으므로 현재처럼 소극적, 명목적 실시가 아니라 철저히 실시되어야 한다. 주택의 경우, 財產權의 대상이 아니라 住居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sup>26)</sup> 이를 위해서는 韓國도 賃貸住宅의 건설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소유공개념을 강조하는 이유는 남한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땅 투기, 집 투기로 인한 不勞所得階層의 증대와 이에 대한 不滿階層의 勞動意慾喪失때문이다. 땅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고 전·월세의 상승, 상가건물의 임대료 인상 등이 뒤따르므로, 庶民大衆은 물론 중소기업의 창업과 중소상점의

26) 韓國에서는 아파트를 財產增殖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獨逸에서는 Wohnung(주거 하는 곳, 사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반추할 필요가 있음.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되는 등 소수에 불과한 不動產所有者 이외의 압도적인 경제주체들에게 타격을 준다. 뿐만 아니라 생산과 관계없는 不勞所得階層이나 필요 이상의 豪華生活樣態는 위화감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실을 남한의 경우 특히 1980年代부터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생산에 대한 기여도의 원칙과 사회적 합의의 원칙에 배치되기 때문에 서독에서도 ‘生產的 所有’라는 개념으로 정착시킨 바 있는데, 이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정착시켜야 한다.

所有公概念은 사회주의 국가와 같이 國有, 組合所有만으로 所有를 국한하지는 않고, 오히려 사유가 기본적이고 모든 형태의 소유가 인정된다. 왜냐하면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私有財產制度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야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전의 사유와 다른 것은 소유의 행사가 公共福利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지의 경우, 耕者有田의 原則에 따라 농민의 私有로, 공장부지는 개별기업의 사유, 주택 등의 경우도 사유가 인정되어, 개인의 이익과 공공선을 함께 고려하자는 것이다.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으로서의 소유가 아니라 재산권의 대상으로서 즉, 財產增殖 내지 投機의 대상으로서 所有內 賣買行爲가 판명되면, 과중한 세금 부과로서 해당 소유에서 온 不當利得을 還收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相續・贈與稅를 탈루없이 철저히 징수하거나<sup>27)</sup> 또는 共同相續制의 도입을 고려해봄직하다. 또한 從業員株主制는 독일, 일본 등에서처럼 종업원의 집단소유, 즉 公共法人, 組合 등의 소유도 장려되어야 한다. 증권이나 기타 개인소유재산은 매매의 유혹에 약하고, 이 경우 기업의 自己資本構造에 변동이 심하여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되기 쉽기 때문이다. 집단소유는 지분에 대한 배당을 받아 資本所得이 있게 되고, 기업의 발전이 곧 종업원의 이익과 결부된다.

### 3. 協同組合과 生活共同體 活性化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공히 일정한 階級性과 物質主義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전통적 민족문화적 共同體意識, 精神主義要素가 결여된 체제

27) 최고상속세율을 국별로 보면, 美國 50%, 英國 40%, 西獨 35%(配偶者, 直系卑屬) ~65%(親族)인데, 南韓은 55%(防衛稅 포함시 66%)로서 매우 높은 수준임. 따라서 각종例外條項과 탈루현상의不合理를 철저히 방지하면, 이 稅源만으로도 南韓 경우 絶對貧困層問題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음. 統計는 崔明根(1990) 參照.

이다. ‘우리’라는 개념 속에는 이해타산을 떠나서 물질적인 계산을 초월한 더 불어 사는 사회, 더불어 사는 정신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전통문화, 민족문화속에 뿌리깊이 지속되어온,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韓民族固有의 유산이다. 이와 같은 한민족 고유의 공동체문화를 경제체제 속에 구현시켜 냄으로써, 外來의 체제와 差別性을 가진 창조적인 질서를 만들 어낸다는 것은 남한의 국민들과 북한의 인민들을 하나되게 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경제체제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물적인 속성을 등한시할 수 없지만, 가급적 선한 의지와 선한 근성을 복원해내어 이념화·현실화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우리 나라는 이미 三國時代로부터 ‘契’라는 고유한 協同組織이 발생하였고, 이조에 와서는 의창, 사창, 상평창 등 共除制度가 있었으며, 양반 유생 사이에도 鄉約이라는 道德的·經濟的 協同組織이 있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농촌에는 두레공동체가 성행하였다. 서구가 자연을 정복하는 문화이므로 자본주의의 경쟁원리나 사회주의의 唯物論이 뿌리박고 있었지만, 우리는 조상 대대로 자연을 벗하며 자연과 함께 하는, 그래서 옷도 평화와 고결을 상징하는 흰 옷을 좋아했다. 사람과 하늘을 동일시하고(人乃天), 하늘과 땅과 사람의 조화(天地人一體)를 중요하게 여겼다. 더구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너’와 “나”가 아닌 ‘우리’로 개념화하였다. 이는 곧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서구 자본주의나 階級葛藤에 바탕을 둔 Marx的 社會主義가 아닌 協同主義文化가 지배적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고유전통은 통일 이후의 공동체문화가 만개되는 協同文化經濟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통일이후에 민족화합의 길로 이끌어낼 수 있는 공통의 요소이다. 따라서 현행 農·水·畜協, 信用協同組合, 새마을金庫, 中小企業協同組合 등은 生活共同體 활동을 본 받아 자율성과 민주성을 구현하고, 정부는 협동조직에 대하여 지배가 아닌 지원정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한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은 協同組合이 경제체제와 무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는 남한에서는 협동조합을 資本主義的 協同組合觀에 입각하여 자본주의를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고, 북한에서는 社會主義的 協同組合觀에 의하여 협동조합을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수단 내지 국가 기관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의 단순한 수단이 아닌, 하나의 경제체제로서의 협동조합주의적 입장에서 파악하고 있는

견해도 있다.<sup>28)</sup> 다만 이 논문에서 중시하는 통일 이후 사회경제체제 구성요수로서의 協同組合活性化라는 명제는 Owen類의 협동조합주의적 이상과 Rochdale組合 이후의 경영기술을 조화시킨 第3世代 協同組合<sup>29)</sup>의 내용을 社會的 市場經濟와 결합시켜 第3의 體制를 만들자는 것이다.

### 參 考 文 獻

1. 姜哲圭, “經實聯의 指向하는 社會經濟體制,” 經實聯 세미나 發表資料, 1992. 6. 25.
2. \_\_\_\_\_ · 崔廷杓 · 張志祥, 『財閥』, 比峰出版社, 1991.
3. 奇宇植 譯, 『이데올로기의 終焉』, 三星文化財團, 1972.
4. 金成悟 譯, 『몬드리곤에서 배우자』, 나라사랑, 1992.
5. 金化燮, 『東北아시아 經濟圈構想과 協力方案-環東海地域을 中心으로-』, 產業研究院, 1991.
6. 朴世逸, 『體制比較의 經濟學』, 國民經濟制度研究院, 1991.
7. 富塚良三, 『經濟學原論』, (金武洪 譯, 『經濟學原論』, 전예원, 1984).
8. 社會科學院 經濟研究所, 『經濟辭典』, 平壤; 社會科學出版社, 1970(理性과 現實, 1988).
9. 서울社會科學研究所, 『社會主義의 理論 · 歷史 · 現實』, 民脈, 1991.
10. 徐鎮英 編, 『社會主義改革과 北韓』,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92.
11. 石見尚, 한살림모임 譯, 『공생의 사회와 새로운 생활양식의 실험』, 한살림, 1991.
12. 申鉉準, “1960~1970年代初社會主義 政治經濟學論爭의 再檢討-짜글로프 論爭을 중심으로,” 『現實과 科學』, 第5號, 새길, 1990.
13. 延河清, 『北韓의 經濟政策과 運用』, 韓國開發研究院, 1986.
14. 吳寬治, 『蘇聯經濟의 長期發展展望』, 產業研究院, 1989.

28) 이는 Owen, Buchez, Fourier로부터 시작, Charles Gide, 日本의 Owen協會등의 견해가 대표적이며, 스페인의 몬드리곤도 실증적인 성공사례임. 이에 관해서는 金成悟 譯(1992) 및 Whyte(1991) 參照.

29) 한살림모임 譯(1991) 및 石見尚(1983).

15. 李根植, “經濟正義란 무엇인가,” 『경제정의』, 創刊號, 1990.
16. 堀江忠男, (李相斗 譯, 『經濟體制를 넘어서』, 三星文化財團, 1981.)
17. 李泰旭 編, 『北韓의 經濟』, 乙酉文化社, 1990.
18. 張原碩, “統一을 為한 第3의 經濟體制,” 『統一論叢』, 第5卷 第2號, 國土統一院, 1985.
19. \_\_\_\_\_ · 鄭勝和, “統一을 위한 經濟體制의 摸索,” 『島山學術論叢』, 第2卷, 島山아카데미研究院, 1992(a).
20. \_\_\_\_\_ · \_\_\_\_\_, “中國 經濟改革의 內容과 性格,” 『中齊 張忠植博士華甲記念論叢』, 1992(b).
21. \_\_\_\_\_, “舊 蘇聯의 經濟發展過程에 對한 評價와 統一에의 含意,” 『檀大論文集』, 第27輯, 檀國大學校, 1993(a).
22. \_\_\_\_\_, “러시아 經濟改革의 性格과 南北關係 改善에의 影響,” 『島山學術論叢』, 第3卷, 島山아카데미研究院, 1993(b).
23. \_\_\_\_\_, “農民團體政策의 展開過程과 改善方向,” 『農業政策研究』, 第19卷 第2號, 韓國農業政策學會, 1992.
24. 鄭成長, “北韓의 經濟管理方式-理論的·實踐的 問題,” 『北韓學報』, 第14輯, 1990.
25. 趙容範 編, 『經濟體制論』, 한울, 1984.
26. 曹尤鉉, 『勞使關係 改革論』, 創作과 批評社, 1992.
27. 崔京九, 『組合主義 福祉國家』, 한나래, 1991.
28. 崔明根, 『우리나라 相續과 稅制體系의 改編에 關한 研究』, 慶熙大 博士學位論文, 1990.
29. 韓國開發研究院, 『北韓經濟의 現況과 展望』, 1991.
30. 黃義珏, 『北韓經濟論』, 나남, 1992.
31. 岡稔 編, 『社會主義經濟論』, 筑摩書房, 1976.
32. 大泉行雄 日譯, W. オイゲン, 『國民經濟學의 基礎』, 勁草書房, 1958.
33. 大野忠南 日譯, 『經濟政策原理』, 勁草書房, 1979.
34. 野正樹, 『現代ドイツ經濟思想の源流』, 文眞堂, 1989.
35. 野尻敏監 日譯, J. Kosta, 『現代の社會主義-理論と現實』, 新評論, 1978.
36. 鶴岡重成 日譯, W. Brus, 『社會主義の機能モデル』, 合同出版社,

1961.

37. ダニローフ, “レーニンの協同組合構想と發展の代替案,”『世界經濟と國際關係』, 第82集, 東京: 協同產業社, 1988.
38. Collier, D., *The New Authoritarianism in Latin America*,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39. Dalton, G., *Economic System and Society*, Penguin Books, 1978.
40. Djilas, M., *The Unperfect Society-Beyond the New Class*, Translated by D. Cooke, Unwin Books, 1969.
41. Eggertsson, T., *Economic Behavior and Institu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42. Galbraith, J. K., and S. Menschikov, (蔣尚煥 譯, “資本主義, 共產主義 그리고 共存”, 書堂, 1988.)
43. Hayek, F.A., *The Road to Serfdo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4.
44. Koo, B.H., *Political Economy of Self-Reliance : Juch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1961~1990*, Research Center of Peace Unification of Korea, 1992.
45. Köppinger, P., “Soziale Marktwirtschaft-ethische Grundlagen, Ordnungsregeln, Instrumente, Soziale Sicherung,” 經實聯 세미나 發表論文, 1992.6.
46. Kornai, J., and Liptak, “Two Level Plannig,” *Econometrica*, Vol. 33 No.1, 1965.
47. Lange, O., *Problems of Political Economy of Socialism*, New Dehli : Peoples Publishing House, 1962.
48. Lenin, V.I., “Five Years of Russian Revolution and the Prospects of the World Revolution,” *Collected Works*, Vol. 33, 1921~1923.
49. \_\_\_\_\_, “On Co-operation,” *Collected Works*, Vol. 33, 1921~1923.
50. \_\_\_\_\_, “좌익 유아성과 뜨티 부르주아 심리,” 李昌輝 編, 『임박한 파국,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새길, 1990.

51. Marx, K., *Das Kapital*, 金秀行 譯, 『資本論』, 第1卷, 比峰出版社, 1989.
52. North, D.C., *Structure and Change in Economic History*, W. W. Norton & Company, 1981.
53. \_\_\_\_\_, and R.P. Thomas, *The Rise of The Western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54. Preobrazhenski, E.A., *The New Economics*,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55. Röpke, W., *A Humane Economy*, Henry Regnery Company, 1960.
56. \_\_\_\_\_, *The Social Crisis of Our Time*, William Hodge and Company, 1979.
57. \_\_\_\_\_, *Civitas Humana*, William Hodge and Company, 1948.
58. Schmitter, P.C., *Still the Century of Corporatism in Trends toward Corporatist Intermediation*, London and California, 1979.
59. Stephan, A., *The State and Socie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8.
60. Wilczynski, J., *Socialist Economic Development and Reforms*, Praeger Publishers, 1972.